

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1. 7. 14 선고 2021가단363 판결 [사해행위취소 등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1. 7. 14.

주 문

1.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/11 지분에 관하여,
가. 피고와 C 사이에 1993. 3. 25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,
나. 피고는 C에게 청주지방법원 단양등기소 2021. 2. 4. 접수 제87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
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(무변론 판결)

판사 권은석

별지1

부동산의 표시

충북 단양군 D 대 378㎡

별지2

1. 양수금 청구

가, 원고 회사는 아래와 같이 본 채권의 최종양수인으로써 양도대상 채권의 원금 및 이자, 지연손해금등 양수받은 채권에 대한 모든권리, 보증인에대한 모든권리, 모든 담보권 및 기타 이에 수반하는 권리일체를 가지는 양수인의 법인이거나, 또한, 소 외 은행이 가지고 있던 채권,채무 등의 권리일체를 원고회사가 인수키로 하였고, 본 계약에 따른 채권 양도 사실을 소외 [C]에게 통지하였습니다.

순번	채 권 양 도 인	채 권 양 수 인	채권양수도계약일	비고
1	중소기업은행	(주)E	2008.5.27.	
2	(주)E	(주)A	2008.6.27.	

2. 소외 [C]는 소외 중소기업은행과 은행신용카드거래 기본약관을 승인하고 카드가입신청서에 서명 날인 후 동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고, 소외 [C]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 2517816호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0.4.15.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.

2. 시해행위 취소 청구

가, 원고는 아직 변제받지 못한 위 금원을 변제 받고자 보전절차를 취하려 하였으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은 1993.3.25. 협의분할에의한 상속유언인으로 2021.2.4. 제주지방법원 단양동가소 제 675호 피고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된 상태였습니다.

나, 소외 [C]는 이미 채무가 있음을 알고 상속자분을 포기하고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무자력이 된 것이며 이것은 명백한 시해행위에 해당합니다.

3. 결어

그러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시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여, 고의로 이전된 소유권을 취소하고 '채권확보'를 하고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고자 본소에 이른 것입니다.

